



충남연구원

수신자 내부결재
(참조)

제 목 육아휴직 및 자녀돌봄휴가 기간 개선 요청 건

인권경영센터에 육아휴직 및 자녀돌봄휴가 개선 요청 건이 들어와 아래와 같은 부서 협조를 요청합니다.

- 내 용
-

1. 건 명 : 육아휴직 및 자녀돌봄휴가 기간 개선

요청 2. 날 짜 : 2020. 5.25.(월) 접수 (실명 접수)

1. 대 상 : 기획경영실 인사복지과

2. 내 용

1) 육아휴직 기간에 관한 사항 : 육아휴직 기간이 짧아 이의 개선 건의

- 현재 우리 충남연구원 인사관리규정 제45조 제7호에 의해 임직원은 육아를 위한 휴직을 할 수 있고, 동 규정 제46조 제1호에 의해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는 일정한 요건하에 육아 휴직을 하고 제2항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
- 충남연구원 보수규정 제8조 제4호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동안은 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나,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고 있음
- 지방공무원의 경우엔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명하고, 그 기간은 제64조 제8호에 따라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, 다만 동 기간 보수는 1년 이내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나, 2년 이후 3년까지는 지급하지 않고 있음

2) 자녀돌봄휴가 기간에 관한 사항 : 자녀돌봄휴가 기간이 짧아 이의 개선 건의

- 현재 우리 충남연구원 인사관리규정 제38조 제6항에는 자녀돌봄휴가를 규정하고 연간 3일(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4일)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, 자녀돌봄 휴가 기간은 유급휴가로 처리하고 있음
-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경우 자녀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2일(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는 3일)로 하고 있음
- 올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는 가족돌봄휴가를

규정하며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은 동법 제22조의2 제2항에 따라 가족 돌봄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허용해야하며, 제4항에 그 기간을 연간 최장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. 단, 그 기간은 무급으로 규정하고 있음

3. 요 청

- 1) 유급 육아휴직 외 무급 육아휴직 운영에 대한 내부 기준 마련 검토 필요
- 2) 2020년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는 가족돌봄휴가의 신청 및 이용에 대한 의무 규정이 만들어졌으며,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게 벌금에 처하는 벌칙 조항이 있으므로 이 법에 따라 현재 인사관리규정 자녀돌봄휴가 일수의 개정이 필요함. 다만 법률은 무급을 원칙으로 하되 유급 선택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내부 기준 제정 필요

끝.

센터장 (초빙책임)	06/23	원장	06/23
연구원)	김병준		윤황

협조자

시행 인권경영센터-0111 (2020-06-23) 접수 ()
) 우 32589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-26(금흥동) / /
https://www.cni.re.kr/ 전화 041-840-1264 / 전송 041-840-1199 / 이메일 pencil@cni.re.kr /
공개-대국민열람